

#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3. 안건요지 : 별첨참조
4. 검토의견 : 별첨참조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995년 2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
전문위원류기현

大田廣域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等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

# 檢 討 報 告 書

1995. 2 .

產 業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# 大田廣域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等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

### 檢討報告

이 條例案은 1995년 1月 24日 大田廣域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5年 2月 2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#### 1. 提案理由

- 가. 이 條例는 舊糧穀管理法 施行令 第18條 및 同法 施行 規則 第11條의 規定에 依據 小規模 粮穀加工業의 施設 및 許可 節次등의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1989. 1. 1. 制定 施行되고 있음
- 나. 同條例는 粮穀管理法上 未備된 小規模 粮穀加工業의 設置基準(地域, 農家數 距離 制限등)을 두어 事實上 許可를 規制하여 왔으나 現 粮政與件上 核家族化에 따른 在來式 粮穀 加工施設은 經營收支 惡化로 市民이 選好하는 小包裝用 生產施設(8kg以下)로의 轉換이 要求되며, 우리市의 경우 農地轉用 및 特用作物栽培등으로 耕地面積이 每年 減少하고 있어 既存 小規模糧穀 加工業所도 自然減少로 規制의 必要性이 없으며,
- 다. 新 粮穀管理法規(糧穀管理法 : '94. 1. 5 改正, 同施行令 : '94. 4. 30改正, 同施行 規則 '94. 5. 25 改正)에는 舊法의 規制事項이大幅緩和 (糧穀賣買業의 許可가 申告로, 粮穀加工業의 許可가 登錄으로)됨으로 規制緩和의 法改正趣旨에 맞도록 本條例를 廢止코자 함.

#### 2. 主要骨子

- 大田廣域市 小親模 粮穀加工業 許可節次等에 관한 條例의 廢止

### 3. 檢討意見

- 今番에 廢止코자 하는 大田廣域市 小規模 糧穀加工業 許可節次등에 관한 條例는 糧穀加工業의 施設 및 許可節次등의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1989年 1月 1日 制定 施行되어 왔으나
- 그동안 農地轉用및 特用作物 栽培등으로 耕地面積이 每年 減少하고 既存의 小規模 糧穀加工業도 自然減少되어 規制의 必要性이 없어짐에 따라 糧穀管理法을 '94年에 大幅緩和하여 許可制로 處理되었던 事項이 糧穀賣買業의 경우에는 申告制로 糧穀加工業의 경우에는 登錄制로 處理토록 改正되었으며,
- 또한 '94年 7月 25日字로 同業務에 대한 權限을 區廳으로 委任하는 것으로 改正 公布한 바, 大田廣域市 小規模 糧穀加工業 許可節次등에 관한 條例는 存置의 必要性이 없는 것으로 判斷이 되는 바, 廢止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됨.